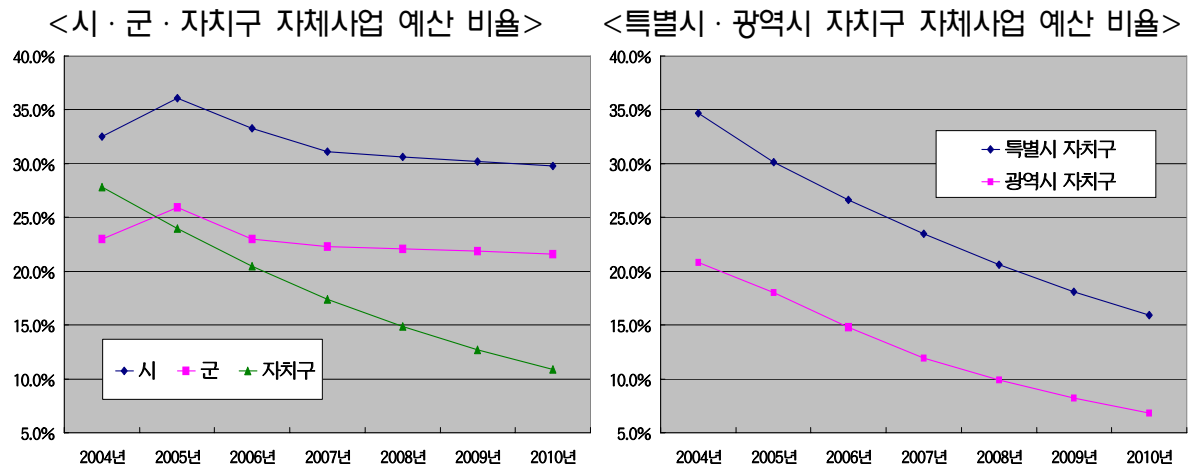


<표10>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 중 「자체사업 예산」 비율

(단위 : %)

구 분	'04년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
전 체 (광역+기 초)	28.9%	30.5%	28.5%	26.6%	25.8%	25.1%	24.4%
기 초 자 치 단 체	29.1%	31.1%	28.1%	26.3%	25.4%	24.6%	23.8%
시(77)	32.5%	36.1%	33.3%	31.1%	30.6%	30.2%	29.8%
군(88)	23.0%	25.9%	23.0%	22.3%	22.1%	21.8%	21.6%
자치구(69)	27.8%	24.0%	20.5%	17.4%	14.9%	12.7%	10.9%
특별시 자치구(25)	34.7%	30.1%	26.6%	23.5%	20.6%	18.1%	15.9%
광역시 자치구(44)	20.8%	18.0%	14.8%	11.9%	9.9%	8.2%	6.8%



2) 기초노령연금 등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증가 전망

현행 법제도를 보면,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. 사회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다면, 지방재정부담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.

우선,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체 노인의 약 60%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%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.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국가가 40~90%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하고 지방은 시·도의 조례로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의 부담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.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,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되는 총 재정부담은 2008년 24,164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34,647억원으로, 2030년에는 191,17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 이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2008년에 5,75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